

VII. 축산환경

2.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 및 신고 기준은?

▣ 허가 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신고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환경과 / 063-238-7449)